

[별표 4]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신청 제출서류

분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가.신청서	1	우수제품 규격추가 신청 체크리스트	
	2	우수제품 지정 평가자료	
	3	우수제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필수 제출
	4	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5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신청서	
	6	우수제품 지정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	
	7	구성대비표	필수제출
	8	신청제품 목록(엑셀파일)	필수제출
	9	모델별 적용내역	
나.소명자료	10	○ 기술소명자료 특허 및 실용 등록신안 권리증서(등록증),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NEP, NET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GS인증 적용 저작권등록 SW GS인증서, 시험결과서, 저작권 등록증(구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 등록부(최근 3개월이내) 기술개발지원 사업 성공제품 관련기관이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혁신제품 성공판정을 받은 혁신제품 인증서 및 성공판정 공문, 혁신제품 규격서	필수제출
	11	○ 품질소명자료 인정자료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인증(GR), 환경표지(환경마크), K마크 우수 품질소프트웨어(GS),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 법제18조에 따라 품질보증조달물품, 신뢰성 인증,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국가, 지자체)의 시험성적서 등 ※ 품질보증조달물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제출 생략	
	12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확인서 (별지 제1호의 6 서식)	해당 시 제출
	13	변경된 추가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	필수제출
	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필수제출 (시스템 확인)
다.신청	15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서	해당시 제출
	16	○ 중소기업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 중견기업 ①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기업 - 「중견기업성장추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②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기업 - 「중견기업성장추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중견기업확인서 ※ 조달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은 해당 입증자료 제출	필수제출
	17	우수제품 지정증서 사본	필수제출 (시스템 확인)
	18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기술 적용확인서’	필수제출
	19	외국산 부품 사용 관련 약약서	필수제출
	20	지정제외 예외 신청서 및 증빙자료	해당 시 제출

	21	(삭제)	-
--	----	------	---

※ 위에 명시된 일체의 서류는 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우수제품-서식자료 메뉴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 PDF 형식으로 제출(단, 8번은 엑셀파일로 제출)

<주>

1. 제출서류는 규격 추가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신청서 접수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조달청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은 가능하고 `특허기술 적용확인서는 접수마감일부터 3주 이내까지 제출 가능하며 지정심사 시 규격추가에 한함)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위 [별표4]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5. 정부조달우수제품 특허기술 적용확인서에 ‘특허기술 적용여부’가 일부적용 또는 미적용으로 체크되거나 ‘특허기술 적용수준’이 일부적용으로 체크된 경우 규격추가 제외
6. 제출서류의 보완·보관 등의 이유로 파일형식과 용량 제한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함
7.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우수제품 규격추가신청 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7자리(생년월일, 성별)를 제외한 뒷자리를 비식별화 처리 후 제출
8. 협업체로 신청하는 경우 물품식별번호는 추진기업에서 부여받아야 함